◉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638호

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(‘26.11.27. 시행) 제32조, 제33조에 따른 전담관리기관 및 위탁기관을 지정

2. 주요내용

가. 전담관리기관 지정

– 지역중소기업법의 각 업무의 지원을 전담 수행하는 전담관리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원 지정

나. 업무위탁기관 지정

–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’ 중소벤처기업연구원 ‘에 위탁

다. 지정기간 등 기타

– 전담관리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하며, 매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조치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지역혁신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imkorean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(전화 : (044) 204 – 75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